

인쇄 : 전병오 / 소비세과 (2010-04-22 15:39:05)

선진납세문화로 만드는 정직하고 아름다운 미래! 稅獎來



국 세 청

한정세
대한민국세이래

수신자 서울특별시 자동차대여사업조합 이사장 귀하
(경유)

제목 서면질의에 대한 의견 회신

1. 귀 조합의 서면질의(2009.7.20, 접수번호 1343호)와 관련입니다.
2.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조건부면세 후 용도변경으로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에 따른 감면세액 징수방법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03(2010.4.1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자료 참조)
3. 2009.7.1 전에 반입한 자동차대여사업용 하이브리드자동차를 2009.7.1부터 2012.12.31까지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같은 조에 따른 감면세액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4.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자동차대여사업용으로 반입한 자가 반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동일한 용도로 재반출할 때 같은 조에 따른 감면세액을 적용하여 개별소비세 징수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면세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하이브리드차를 조건부면세 후 용도변경으로 개별소비세 징수시 감면세액 차감 여부

□ 관계법령

- 개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질의내용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하이브리드자동차를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받고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던 중

- 5년 이내에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 하이브리드자동차 반입시 감면될 세액을 징수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와 차감하는 경우 징수세액의 계산방법

<제1안> 용도변경하여 징수하는 때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에 따른 감면세액을 차감

* 개별소비세 징수세액 = 과세가격(취득가격×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세율-조특법 §109에 따른 감면세액

<제2안> 용도변경하여 징수하는 경우 반입시의 면제받은 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에 따른 감면세액을 차감한 후 차량 잔존가치율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징수

* 개별소비세 징수세액 = [(취득가격×세율-감면세액)+세율×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세율

□ 회 신

○ "제2안"이 타당합니다.(재경부 환경에너지세제과-203, 2010.04.16.)